**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관련 규정 등 안내**

2020년 5월 기준

인권센터는 교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 성평등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전 구성원을 대상을 '인권과 성평등 교육'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'인권과 성평등 교육'은 2017학년도에는 오프라인 강의로 시행되었고 2018학년도부터는 블랙보드(kulms.korea.ac.kr)에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
한편, 본교는 각 구성원에 따라 '인권과 성평등 교육'의 이수를 졸업요건,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, 승진승급 결격사유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운영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(2019.12.23.기준).

- 아 래 -

* **학부생:** 교육과정 편성.운영 시행세칙 제43조(졸업요건)에 따라,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,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함.
* **일반대학원생:**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 시행세칙 제43조(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, 제44조(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)에 따라,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.

* **법학전문대학원생:**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규정 제41조(수료학점)에 따라, 재학 중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.

* **전임교원:** 교원인사규정 제64조(승진승급 결격사유)에 따라,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수한 경우 승진승급 결격사유에 해당함.
* **비전임교원 및 촉탁강사:** 매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추후 재계약 가능함.